

서울특별시마포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, 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4. 11. 26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4.11.17.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4.11.21.
- 다. 상정일자 : 제19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(2014.11.26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제안설명자 : 김 은 영 사회복지과장

가. 제안이유

현행 조례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, 공공시설 내 매점·자동판매기 등의 우선계약대상 범위를 추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1)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핵심용어를 사용하여 조례명을 간결하게 수정
 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운영 및 자동판매기 설치

계약에 관한 조례」

2)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수정(안 제1조)

현 행	개 정 안
「장애인복지법」 제38조	「장애인복지법」 제42조
「모자복지법」 제15조	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15조
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	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

3) 공공시설 내의 매점 등에 대한 우선계약대상 추가(안 제1조)

- 서울지방보훈청의 권고에 따라 독립유공자,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우선계약대상에 추가
- 4) 계약의 해지기준을 신설(안 제6조의2)
- 5) 우선계약대상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 세부 평가기준 추가(안 별표)
- 6)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」에 따른 용어 정비

3. 검토보고 (김건재 전문위원)

- 본 개정안은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및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의 상위법에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에 대한 생업 지원 규정이 신설되고, 서울지방보훈청의 “매점 및 자판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지원대상 범위 확오사항 수정의견” 송부 등에 따라 조례안 [별표] “장애인등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” 대상에 “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” 등을 신설하며, 그 밖에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」 등에 따라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- [별표] “장애인등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”에서 “독립유공자·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”은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 및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8조의2 규정에 독립유공자와

국가유공자를 포함하여 그 유족뿐만 아니라 가족도 생업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바, 이를 “독립유공자·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”으로 하고, 안 제1조 중 “독립유공자·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”과 안 제5조제1항 중 “독립유공자·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”은 각각 “독립유공자·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”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 타 : 없 음